대학위원회 관리규정

2018.02.21. 개정
2016.02.22. 개정
2006.03.01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9.30., 2016.2.22., 2018.2.21.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각 위원회 별로 간사 1인을 둔다. <개정 2016.2.22., 2018.2.21.>

② <삭제 2016.2.22.>

③ 간사는 해당 직무별 주관부서의 실무 담당자로 한다.

제2조의2(위원회 등급 및 활동평가) <개정 2018.2.21.> ① 본 대학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활동실적(활동내용의 중요도, 수행 난이도, 활동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다)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원회 등급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6.2.22.><개정 2018.2.21.>

② 위원회별 운영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의 활동실적 평가시 위원회별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성과를 작성하여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2.21.>

③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성과를 대학 의사결정 회의체에 상정하여 위원회 등급을 결정한다. <신설 2018.2.21.>

④ 별도 현안 과제 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TFT의 활동도 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. <신설 2018.2.21.>

제3조(임기) ① 각 위원회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이 가능하다. <개정 2018.2.21.>

② 당연직 위원인 경우 임기는 보직 임용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활동 중 교체되거나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위원회 운영 만료시까지로 한다. <신설 2018.2.21.>

제3조의2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<신설 2016.2.22., 2018.2.21.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6.2.22.>

③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 <신설 2016.2.22.>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, 주관부서가 관리·보관한다. <개정 2018.2.21.>

제4조(위촉방식) ① 각 위원회별 위원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지원한 교원 및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.2.21.>

② <삭제 2016.2.22.>

③ <삭제 2016.2.22.>

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교원이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하고, 특정 교원이 과다한 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6.2.22.> <개정 2018.2.21.>

제5조(편성) ① <삭제 2016.2.22.>

② <삭제 2016.2.22.>

제6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 전체 위원회에 적용된다. <개정 2016.2.22.>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6.2.22.>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 대학 위원회 등급 구분표 <삭제 2018.2.21.>